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3150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2년 3월 10일
- 라. 회부일자 : 2022년 3월 16일

2. 제안이유

- 가. 2021. 7. 28.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을 확정·발표함.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주요내용 】

- 지방소비세(4.3%p) 확충 4.1조원(국고보조사업 기능이양 2.3조원 포함)
-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 핀셋지원 0.2조원

- 나. 이 중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10년 간(’ 22년~’ 31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원(’ 22년은 0.75조원)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됨.

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2년 1월 개정 완료되었으며, 개정 법령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운용을 맡게 되어 기금 조합의 규약 개정이 필요해짐.

라. 「지방자치법」 제176조와 제18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17개 시·도의 협의를 통해 입안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합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 편입됨(안 제1조, 안 제5조제1항 제1호·제5호·제6호·제8호·제9호, 안 제8조제1항제5호, 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36조, 안 제37조).

나. 지방소멸대응기금 편입에 따른 조합회의 및 실무협의회 등 구성·인원수 변경을 반영함(안 제6조제2항, 안 제12조제1항, 안 제18조제3항)

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초지원계정 신설 및 재원·용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안 제27조~제35조 신설).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신설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이 기금의 관리·운용을 맡게 됨에 따라 조합의 규정을 변경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임.

나.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운영 현황

-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수도권 지역의 지방소비세 안분액¹⁾ 35%를 재원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신설되었음.
 - 기금은 당초 2010년부터 10년간 3조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2019년~2020년)”²⁾에 따라 출연기한이 10년 연장되었음(2021년까지 총 출연금 4조 2,589억원 중 서울시 출연금은 1조 9,110억원).

1)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목으로 부가가치세액의 5%(2010)에서 정부의 1·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11%(2014), 15%(2019), 21%(2020), 23.7%(2022), 25.3%(2023)로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며, 통계청이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소비지수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비수도권 도(100 : 200 : 300)를 권역별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배분하고 있음.

2)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확대(11%→21%), 3조 6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20%→45%), 국세 대 지방세 비율 개선(7:3) 등을 추진함.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용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조합”)이 담당하고 있고, 조합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별도의 사무국을 두지 않고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조합의 업무를 위탁하였음.
- 2015년부터는 기금의 계정을 ‘재정지원계정’ 과 ‘용자관리계정’ 으로 분리해 출연금의 50%를 각각 배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환사업보전계정’ 이 신설되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비를 보전하고 있음.

<기금 용도별 계정 현황>

계 정	재 원	도 입	세부내용	배 분
재정지원	출연금 50%	2010년	지역발전 및 지역상생 사업 재정지원	재정여건 등
용자관리	출연금 50%	2015년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용자지원	
전환사업보전	지방소비세 4조 5,992억원	2020년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비용 보전	국가 균특회계 이양사업 규모

- 한편, 정부는 2021년 7월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소비세 4.3% 증가분(2021년 21%→2023년 25.3%)으로 지방재정 순확충 1조원을 마련하고, 낙후 지역의 인프라 등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하였음.
- 이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 개정(2021.12.7)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설치되고 조합에서 이 기금의 운용·관리를 담당하게 되었음³⁾.

- 지역소멸대응기금은 2022년에서 2031년까지 10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매년 1조의 출연금(2022년 7,500억원)을 재원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됨.

다. 조합 규약의 주요 개정사항

- 조합 규약의 개정사항은 ▶ 적용 대상의 확대(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13조~안 제17조, 안 제36조, 안 제37조), ▶ 위원의 확대(안 제6조, 안 제12조, 안 제18조), ▶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안 제27조~안 제35조), ▶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연장(부칙 안 제2조)으로 구분됨.

<규약 개정사항>

개정조문	개정내용
제1조(목적), 제5조(조합의 사무), 제8조(조합회의의 의결사항), 제13조(조합장), 제14조(사무기구), 제15조(기금의 회계연도), 제16조(기금의 계정 구분), 제17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제36조(성과분석), 제37조(사무위탁)	적용대상에 지역소멸대응기금 추가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제12조(실무협의회), 제18조(결산)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위원 확대
제27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28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제29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제30조(광역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1조(광역지원계정 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제32조(광역지원계정심의 위원회), 제33조(기초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4조(기초지원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용한다.

계정 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제35조(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전환사업보전계정 적용기한)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연장

- 적용 대상의 확대는 조합이 관리·운용하던 규약의 적용범위에 지역 상생발전기금 외에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는 단순 개정 사항임.
- 위원의 확대는 조합회의에 행정안전부 균형발전 담당 국장과 균형발전 전문가(2명)를 위원으로 추가하고(조합회의 위원 20명→23명)(안 제6조 제2항), 행정안전부 균형발전 담당 과장의 실무협의회 참여(안 제12조 제1항), 기금 결산검사 위원의 증원(3명→5명)(안 제18조제3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소멸대응기금 관리·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음.
-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안 제27조~제35조)는 지방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지방기금법령”)의 규정을 규약에 반영한 것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안 제27조, 안 제28조), 중앙과 지방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협약(안 제29조), 광역지원 계정과 기초지원계정(안 제30조~안 제35조)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규약의 개정조문별 법령 근거>

규 약	지방기금법령
제27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법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① 시행령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28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법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② 시행령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제29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법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시행령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30조(광역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3조(기초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법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법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제31조(광역지원계정 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제34조(기초지원계정 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법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제32조(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제35조(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법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시행령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지방기금법”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정부 출연금 1조원(2022년 7,500억원)과 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제23조),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제24조·제25조) 계정별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결산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음(제26조).
 - 기금의 재원은 광역지원계정에 25%, 기초지원계정에 75%가 각각 배분되며,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2021.10.19. 행정안전부 지정·고시, 89곳)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될 예정임.
- 규약 개정안은 “지방기금법령”에 따라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별로 재원과 용도(안 제30조, 안 제33조), 지원기준과 사용용도(안 제31조, 안 제34조), 계정별 심의위원회(안 제32조, 안 제35조)를 각각 규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와 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한편, “지방기금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 개시 일정시점(광역은 5개월 전, 기초는 6개월 전)까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을 제출하면, 계정심의위원회의 협의와 자문을 거쳐(법 제27조, 시행령 제22조)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토록 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사업을 국가와 공동추진을 위해 투자협약안을 제출하면 계정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약체결기관을 선정하며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됨(법 제29조, 시행령 제25조).
- 이처럼 규약 개정안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제출, 계정심의위원회 협의 및 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규정해 지역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음.
- 규약 개정안의 부칙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일을 규약의 시행일로 하고(안 제1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2조).
- 이는 재정분권 1단계 추진계획에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사업에 대한 비용보전을 위해 2022년도 말까지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2026년도 말까지 연장한 것임.

- 정부는 재정분권 1단계 방안에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기존 11% → 2019년 15% → 2020년 21%) 약 8조 5천억원의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3조 6천억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국고보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였음.

라. 종합의견

- 동의안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조합의 규약 변경시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따라 조합 규약 개정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음.
- 규약의 개정사항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 “지방기금법령”을 반영해 조합의 지역소멸대응기금 관리·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지방소비세의 인상 효과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일수록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칙의 유효기간(안 제2조)이 종료될 시점에 지방재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또 다시 연장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성만	2133-8055

<붙임자료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1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76조제1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영) ①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영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나.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 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나. 그 밖에 기초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각 1명은 각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투자계획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①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기금관리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와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부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부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2.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 경우 10명 중 4명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군·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2.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 경우 10명 중 4명은 제1항제2호 후단의 추천권자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립 전에 수립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립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관련 여건분석 및 전망
2.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
3.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4. 사업별 규모 및 자원배분계획
5. 사업의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6. 다른 재정지원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7.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용도와의 적합성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연계성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한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협의 또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하거나 자문 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를 시·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기금관리조합”으로,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28조제1항”으로, “발전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도”는 “시·도 및 시·군·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의 전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보고서를 기금관리조합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공동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의 적합성
2. 지역의 주도적 사업 추진의 필요성
3.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과의 관계
4. 사업추진 시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6. 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7.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에 효율적인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동투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내용 및 협약 기간
2. 사업의 주관부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역할
3. 사업의 투자 분담
4. 사업의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
5. 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6. 그 밖에 공동투자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관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안(이하 “공동투자협약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⑤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선정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⑥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보하고,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이하 “공동투자협약체결안” 이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작성해야 한다.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제9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출이나 체결 전에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